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299-01

제2회 북한인권 개선 공청회

—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방안 —

- 일시 | 2011. 2. 23(수), 14:00-17: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0층)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2회 북한인권 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귀빈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첫 번째 세션에서 북한의 상황을 증언해 주시기 위해 특별히 참여해 주신 장철현, 김영호님과 두 번째 세션을 맡아 주실 신 울 교수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김홍광 NK 지식인연대 대표님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필운 박사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 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장님,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튀니지에서 시작된 모바일 혁명이 이집트를 거쳐 중동의 여러 나라로 번져가는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바라크 30년 독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모 일간지 논설에서 무바라크 체제의 붕괴는 ‘제2의 베를린 장벽 붕괴 사태’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23년간 튀니지를 통치한 독재자 벤 알리는 지난 1월에, 30년간 독재를

행한 무바라크는 2월에 국민들의 저항에 전격적으로 나라를 탈출하다시피 떠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민주주의의 불길의 아랍권 전체로 옮겨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앙의 근원에는 정보화의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정보유통이 있었습니다. 중동에서의 모바일 혁명은 국민들 스스로가 디지털 정보를 생산하고, 이동하고, 소비하는 새로운 메가트렌드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는 여태까지 중앙집중적인 방송, 라디오 등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알권리를 통제해 오던 구체제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독 극동아시아의 조그마한 한 곳만큼은 아직까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세상과의 소통을 막고 있습니다. 기실 오늘 여기 토론자로 참여해 계신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전해 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북한의 정보통제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자유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의 정보접근권, 알권리를 어떻게 전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도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려주고 싶은 열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마침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 세계에 알리고 있고, 이는 북한에도 이미 30만대의 휴대전화가 보급되었다는 보도 등에 비추어 북한주민들 중 일부는 어쩌면 트위터로, 어쩌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의 공청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방송 송출의 법적,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발표를 해 주시는 귀중한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

셨습니다.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주시고 훌륭한 발제를 준비해 주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에도 변화의 봄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면서 바쁜 일정에서도 북한인권 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귀빈들께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우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방안”이라는 주제로 “북한인권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위이자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구현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논의에서 실마리를 풀어보는 것이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원과 인권위가 오늘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연유입니다.

방송은 사람들에게 많은 소식을 알려,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사회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독일의 통일을 방송이 주도한 통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이러한 방송의 특성을 활용하여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사회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에 방송을 확대하기 위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정필운 박사님은 방송통신분야의 기술과 법을 두루 알고 있는 국내에 몇 안 되는 전문가이며, 우리 원의 자랑입니다. 스마트시대에 방송통신분야의 리더를 자임하는 우리 원의 전문성이 북한인권 개선에 일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우리 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기 위하여 힘써주신

현병철 위원장님,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동주최를 위하여 애쓰신 우리 원의 한수용 정책연구본부장님, 권오상 방송통신연구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방송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십시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프 로 그 램

❖ 일시 : 2011년 2월 23일(수) 14:00~17: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0층)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사 회 개 회 사 축 사	원재천 정책교육국장(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14:10~14:50	북한주민들의 알권리, '무엇을 전할 것인가'	증언 : 김영호 (북한이탈주민) 장철현 (북한이탈주민) 발제 :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14:50~15:00	휴 식	
15:00~17:30	북한주민들의 알권리, '어떻게 전할 수 있나'	좌장 : 신 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 : 김흥광 대표(NK지식인연대) - 북한사회와 주민의식의 역동적인 변화상태 와 활성화 방안 정필운 박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북한지역에 대한 방송 송출 : 기술적·법적 가능성 검토

시 간	내 용	비 고
		<p>토론 : 이광백 대표(자유조선방송) 하태경 대표(열린북한방송) 이승훈 부장(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유식 대표(디시인사이드) - 대담 [종합토론] 플로어, 트위터 질의 및 응답</p>
17:30	폐 회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 주제발표 1.

북한주민들의 알권리, '무엇을 전할 것인가' 1

증언 : 김영호(북한이탈주민)

장철현(북한이탈주민)

발제 : 김태훈(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주제발표 2.

북한주민들의 알권리, '어떻게 전할 수 있나' 19

발제 : 김홍광 대표(NK지식인연대)

- 북한사회와 주민의식의 역동적인 변화실태와 활성화 방안

정필운 박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북한지역에 대한 방송 송출 : 기술적·법적 가능성 검토

토론 : 이광백 대표(자유조선방송)

하태경 대표(열린북한방송)

이승훈 부장(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유식 대표(디시인사이드)

주제 발표 1

북한주민들의 알권리, ‘무엇을 전할 것인가’



증언 : 김영호 (북한이탈주민)

장철현 (북한이탈주민)

발제 :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북한 주민의 외부 영화 및 드라마 시청 실태

-증언-

김영호 (북한이탈주민)

1. 북한 주민들이 주로 보는 영화와 드라마는 어떤 것인가?

남조선 드라마 “나쁜 여자들”, “선녀와 사기꾼”, “가을 동화”, “천국의 계단”, “장군의 아들”, “투캅스” 1, 2부, “튜브”, “달마야 놀자”, “조폭 마누라”, “별이 빛나는 밤에”, “시라소니” 등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 뿐 아니라 미국영화 “007”, “포위속에서”, “단독으로”, “미녀 삼총사”, 소련 영화 “발렌타인데이”, “단독 항행”, 중국 영화 “취권”, “무술왕 방세옥”, “정무문”, 연변 텔레비전 연속극 “사랑의 품”

2. 얼마나 보았는가?

본인이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를 자기 가족이나 친척, 친구,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관람 하곤 했습니다. 본인이 살던 마을에 약 50세대가 넘는 집들이 있었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담은 CD알판을 서로 바꾸어 가면서 시청했습니다. 어느 가정이라 할 것 없이 마을 주민 거의 100%가 남조선 영화나 다른 나라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에서는 단속 사업을 강화해 나갔었는데요, 당위원회 행정부를 책임 부서로 정하고 여기에 검찰소나 인민보안서, 청년동맹 일군들을 망라시켜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조직해 단속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2006년 청진시 청암구역 당위원회 행정부에 제기되었던 사례입니다. 청진시 청암구역 문화중학교에서는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의 가방을 검열했었는데 학급 43명중 CD알판이 나온 학생은 무려 35명이나 됐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빌려간 알판을 돌려주려고 가방에 넣었던 학생도 있었고 서로 바꾸어 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을 처벌하려 해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아버지가 구역당 일꾼이거나 외화별이 사장, 보안원, 검찰소 검사 등 간부 자식들이 많아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청진시 뿐 아니라 북한 대도시, 군 단위에 이르기 까지 비밀비재 하게 일어났습니다. 간부 및 중산층 가정들에서는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를 밤이 새도록 보곤했습니다.

3. 어떻게 영화나 드라마를 얻는가?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녹화물을 장마당이나 주변 친구, 지인들에게서 빌리거나 돈으로 사서 보곤했습니다. 국경지대에서는 중국에 밀수하려 다닌 사람들이 가져오거나 무역으로 중국과 거래를 하는 무역일꾼들이 대방에게 부탁하여 구하곤 했습니다.

4.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남조선이 정말 발전했구나,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는 것, 자본주의 사회가 결코 사람 못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개혁 개방의 현실을 더욱 똑똑히 확인하게 됐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남조선이나 미국 사회가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능력껏 잘 살 수 있는 사회다, 우리도 개혁 개방해야 잘 살 수 있다, 미국이나 남조선을 자꾸 욕하고 비난하면 지원해 주던 쌀이나 강냉이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욕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조선, 미국 등 자본주의 나라들의 영화나 드라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 사회

가 결코 썩어빠진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특히 남조선이 북한과 같은 한민족 한겨레의 나라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북한 현실을 돌이켜 보게 하며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가를 배워줍니다. 남조선이나 미국 등 자본주의 나라들을 동경하고 그곳에서 살아보았으면 하는 욕망이나 꿈을 안겨줍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침해 실상과 방안

-증언-

장철현 (북한이탈주민)

1.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침해 실상

① 언론 및 문화 폐쇄 실상

- 북한 독재는 당조직부를 통한 권력독재와 선전선동부를 통한 감성독재라는 양대 축에 의해 유지
- 북한은 당선전선동부 선동정책의 유일적 관리에 의해 언론, 문학, 무대예술, 영화, 심지어 대중문화까지 통제받는 실정
- 여기에 국가검열위원회라는 추가적인 검열 및 관리 장벽도 문제
- 북한의 모든 선전, 언론, 작가들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당생활 지도 및 행정적 관리 영역 안에서만 전문성을 발휘
- 문예물들 같은 경우 수령 신격화를 주입하는 주체문예이론의 틀거리 안에서만 창작 되도록 허용
- 언론의 경우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3대 방송이 주도하고 다른 언론은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방식의 일체성
- 대중문화 같은 경우 개인 활동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기관에 소속된 대중문화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국가검열위원회의 감시와 관리에 의해서만 공개되도록 제도화

② 정서왜곡 실상

- 과도한 신격화 주입과 역사 왜곡으로 일관된 정서주입
- 김부자 신격화를 위해 사실을 왜곡한 선전
- 당 통전부 대남심리전 기지인 101연락소 역량을 역이용하여 김정일을 통일의 구심점으로 추앙한다는 내용으로 남한 민심을 왜곡하여 선전
- 선전선동부 대외선전부 역량을 동원하여 해외 언론과 민심이 김정일을 존경한다는 왜곡된 선전
- 국가보위부 정치국 소속 유언비어과를 통해 조작된 체제 우월감과 정세 주도용 유언비어를 유포

2. 북한 주민들의 현 정보 유통 실태

- 시장이 확대되며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남보다 정보 선점을 먼저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 특히 쌀 가격이 모든 시장 물가를 좌우하는 현 상황에서 대외지원에 대한 정보를 남보다 먼저 얻으려는 경쟁
- 또한 시장을 통해 물물교환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 공유
- 북한 주민들이 주로 얻는 대외 정보는 라디오를 통해 입수
- 2002년 김정일의 지시로 소형 라디오의 자발적 반납을 호소했을 때 평양시에서만 3만대가 회수
- 또한 컴퓨터, 비디오, 휴대폰, MP3, USB와 같은 물건들이 도입되면서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폐쇄 약화
- 북중과 중성의 관계 속에서만 소통이 허락되던 북한에 인터넷(내부 네트워크) 채팅, 휴대폰, MP3, USB를 통해 주민들 상호간 소통문화가 발생
- 시장 확대의 영향이 가치관과 의식으로 변화로도 이어지며 외국문화, 특히 한류가 유행

3.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지원 방안

- 라디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
- 특히 뉴스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김부자 신격화를 붕괴시킬 다양한 정보를 제공
- 뼈라는 전파장애도 보조수단도 필요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유익한 수단
- NGO단체들의 풍선 보내기를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필요
- 드라마, 다큐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문예물들과 편집물들을 북한에 유입
- 특히 휴대가 간편한 USB를 통한 정보 제공
- 북한의 전파장애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극동방송을 통한 정보 제공

“알 권리”의 주체로서의 북한주민, 무엇을 전할 것인가?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1. 북한인권의 심각성

가. 북한은 지난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실패로 경제위기를 맞은 이후 지난 2010년 6·25 남침 60주년을 맞아 3월 26일 해군 승무원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사건과 11월 23일 민간인 2명의 사망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낸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켜 정권의 폭력성과 반인도적 범죄성을 노골화 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0년 9월 28일에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를 열어 3대 세습을 공식화함으로써 폭력정권의 영구화를 기도하였고, 한편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무기를 이용한 대한민국 공격 가능성까지 공언하고 있다.

나. 이미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오래 전부터 세계적인 현안이 되어 유엔은 지난 2010년 12월 제65차 유엔총회에 이르기까지 매년 6회에 걸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 자의적 구금, 공개처형 등이 빈번히 시행되고, 20여만 명을 혹독하게 강제노역시키는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다.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철저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고, 국군포로·납북자들에 대한 송환은 물론 생사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1990년대에 3백만의 아사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핵무기 개발 등으로 자원을 낭비하며 주민의 식량권을 침해하여 절대다수의 주민을 아사

지경으로 몰고 있고,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가혹하게 고문하거나 처벌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비민주적인 폭력의 행사로 ‘공포의 나라’(State of Fear)가 되었고, 외부로도 그 폭력을 행사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소중한 생명권을 비롯한 각종 인권을 빈번하게 침해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북한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는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북한이 스스로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196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ICESCR, 1966),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1989),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79)등의 유엔인권규범에 반한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온갖 인권유린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 소정의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 또한 대한민국 영토에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수백 발의 포격을 가하여 민간인을 살해한 지난 연평도 포격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는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에 위반하고, 유엔헌장상의 무력사용금지원칙(principle of non use of force)을 위반한 국제평화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peace)일뿐만 아니라 위 로마규정 제8조 소정의 전쟁범죄(war crimes)를 구성할 소지도 있다.

2. 북한주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

가. 북한이 국가권력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의 인권 개선운동을 통하여 조속한 북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폐쇄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권을 찾고 민주화를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다. 1989년 동독을 비롯한 모든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졌음에도 유독 북한만 붕괴되지 않았고, 1990년대

중후반 300만이나 굶어죽었어도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다른 공산권 국가에 비해 전례가 없는 강력한 정치적 억압과 철저한 정보통제로 주민들의 고립과 무지(無知)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1998년 아시아 사람으론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마티아 센(Amartya Sen)에 의하면 아무리 식량생산이 적더라도 국민들에게 인권의식이 있어서 정부 정책과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기아(饑餓) 대책으로 돌리도록 만드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면 아사자는 결코 생길 수 없다고 한다.

나.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하나인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헌법 제10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헌법 제1조)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일찍이 유엔총회는 1946년 제1차 회기에서 “정보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는 근본적인 인권이고, 유엔이 헌신해야 할 모든 자유의 시금석(touchstone)이다”고 선언했다.¹⁾ 『세계인권선언』 제19조도,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이 권리는…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자유권규약』 제19조도,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북한 헌법 제67조도 공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11일 사이에 실시된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실무그룹(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제6차 회기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도, 북한의 모든 국민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480가지의 신문들이 국가 또는 지방 차원에서 공장, 기업, 대학 등에서 발행·배포되고 있으며, 수백가지의 잡지들이 수십개의 인쇄매체에 의하여 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모든 국민들은

1) Resolution 59(1), 14 December 1946 (<http://www.un.org/documents/ga/res/1/ares1.htm>).

그들의 의견 및 견해를 TV 등의 매체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²⁾

라. 그러나 북한은 외부정보의 차단을 체제유지의 핵심요소로 삼고 지난 60여년 동안 주민감시를 위한 정치적·사회적 시스템, 즉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국가검열위원회, 사회주의범무생활위원회, 주민 상호 고발 등의 감시 제도와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와 같은 처벌 장치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봉쇄하여 왔다. 북한의 TV 및 라디오 주파수는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신문은 김정일의 행적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내용,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알리는 내용,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만을 다룬다. 북한의 모든 언론 매체는 김정일 정권과 체제 유지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근래에는 3대세습을 위한 김정은 포함)의 이상화를 목적으로 한 선전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

마. 북한에서는 2-3살 걸음마 시작할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하늘보다 위대하신 아버지 수령님의 말씀을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믿어야 한다”는 김일성·김정일의 이상화 교육이고³⁾, 북한에서 살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법은 “수령에 대한 결사옹위 정신, 김일성에 대한 숭배사상”으로 되어 있다.⁴⁾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지식, 인격함양을 위한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2005년 이후 탈북한 사람을 주로 하여 200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권교육 혹은 그와 비슷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9명만이 “예”라고 답변하였고, 절대다수인 179명은 “아니오”라고 답변하였고, 2명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⁵⁾

바. 국경 없는 기자회견(RSF)가 2010년 10월 19일 발표한 ‘2010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10대 언론탄압국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의식 조사에 의하더라도 2008년과 2010년 연

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HRC/WG.6/6/PRK/1, 27 August 2009. 42항 참조.

3) 대한변호사협회, 『2010 북한인권백서』, 373면 참조

4) 위 대한변호사협회, 『2010 북한인권백서』, 37면 참조

5) 위 대한변호사협회, 『2010 북한인권백서』, 40면 참조

속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억제로 밝혀지고 있다.⁶⁾ 그러므로 이와 같이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북한사회에 우선 필요한 것은 남한과 국제사회가 지원해 주는 물질적인 식량 이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야 할 정신적 양식이라 할 것이다. 미국도 이 점에 착안하여 상원은 지난 2010. 6. 25., 하원은 같은 달 30일, 각 북한 주민에게 바깥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활동 시한을 철폐하는 국제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북방송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보내는 단파방송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한국어방송이 있고, 일본 민간방송으로서 ‘바닷바람’, 일본 정부방송으로서 ‘고향의 바람’도 있다. 국내에서는 ‘자유외의 소리’⁷⁾, 한국 방송공사에서 하는 ‘KBS 한민족 방송’, 극동방송, 열린북한방송·자유북한방송·북한개혁방송·자유조선방송 등 4개 민간대북방송(모두 단파 방송)이 있다. 대북 전단지 사업은 기독교인연합·자유북한운동연합·탈북인단체총연합회 등이 있고, NK지식인연대는 2008년부터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대북언론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주민에게 무엇을 알릴 것인가?

3. 북한 주민에게 무엇을 알릴 것인가?

가. 북한 주민은 조선왕조 - 일제 군국주의 - 김일성 공산주의 및 수령절대주의의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경험할

-
- 6) 대한변호사협회가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에 2005년 이후 탈북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 탈북자들은, ① 66명(33%)이 의사표현의 자유 억제를 첫째로 꼽았다. 그 다음 ② 41명(21.5%)이 이동의 자유 억제, ③ 23명(11.5%)이 식량배분 불공정, ④ 18명(9%)이 정치범 수용소의 공포, ⑤ 15명(7.5%)이 자의적 구금, ⑥ 6명(3%)이 종교의 자유 억제, ⑦ 31명(15.5%)이 기타 등을 차례로 들고 있다. 2008년 조사시에는 100명 중 ① 23명이 표현의 자유 억제, ② 12명이 먹고 사는 문제, ③ 11명이 이동·여행의 자유 제한, ④ 5명이 성분 차별, ⑤ 3명이 사회적 감시, ⑥ 3명이 연좌제, ⑦ 2명이 공개처형 등을 차례로 들어서, 역시 표현의 자유 억제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주되고 있었다. {김태훈, 『북한의 인권정책』, (대한변호사협회, 『2010 북한인권백서』) 42면-47면 참조}
- 7) 국방부에서 하는 대북심리전 FM방송으로 2004. 6. 14. 남북 간 선전활동 중지 합의에 따라 중단됐다가 천안함 여파로 2010. 5. 24. 재개됐다.

기회가 전혀 없었다. 게다가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의 절대적인 수령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반하는 사고가 싹트지 못하도록 출생부터 사망까지 철저한 세뇌교육과 정보통제 및 공포정치를 하여 북한 주민에게는 인권의식과 민주화 열망이 생길 여지가 없었다. 즉 북한주민은 알지 못하므로 원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은 북한주민과 외부와의 의사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주민에게 외부 자유세계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사실들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이슈나 ‘한류’와 같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면모를 영상매체 등을 통해서 북한주민들에게 반복적이고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적인 이슈에는 최근 이집트 등 중동지역에서 불고 있는 시민혁명의 열기가 포함될 것이다. 또 비록 정치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해지는 일상 정보들이 정확하면 자연히 자꾸 보고 듣게 되고, 비교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왜 이렇지’ ‘왜 못하지’라는 의문을 품고 나름대로 원인 제공자를 찾게 된다. 한편으로는 북한 내 타 지역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다. 내부 이동이 제약되어 있는 북한에서는 북한 내의 정보교환 자체가 귀중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 귓속말을 하며 은밀한 모임을 만드는 것이다. 정보에 밝아진 사람들이 모여 발전하면 결국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다. 북한정권의 존재기반은 김일성 가계(家系)의 이상화에 있으므로 북한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북한의 정신적 지주인 수령숭배사상의 거짓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빨치산 투쟁으로 시작하는 김일성 신화의 터무니없는 허구성, 김일성·김정일 부자 등 로열패밀리와 지배층의 비행, 호화생활, 여자관계 등을 밝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예컨대 김정일과 60년대 국민배우 성혜림, 70년대 국민무용수 고영희 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말하면 잘 인식된다고 한다. 즉 김일성의 모친 김반석은 ‘조선의 어머니’, 김정일의 모친 김정숙은 ‘혁명의 어머니’ 라고 선전하고 있는데(2010년 9월 29일자 조선일보), 그러면 김정은의 모친 고영희는 누군인가? 후계자작업에 열 올리는 이때를 맞추어 김정은이 결혼식도 안한 여자의 소생

이라고 알려주면 앞길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다(북한기독교인연합 이민복 등)⁸⁾. 신격화되어 있는 수령의 허상을 깨닫게 되면 북한 인민들은 각성과 분노를 자아내게 되고 절대적으로 매달렸던 수령주의에 환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라. 탈북자들은 주로 어떤 장면을 보고 남한이 발전했다고 생각했는가 라는 질문에 가정방(집), 거리, 자동차, 옷차림새, 식탁에 차려지는 음식, 여성의 운전 등을 꼽았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이러한 실상을 알려줌에 있어서 특히 같은 고향사람인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북한의 선전과 달리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 가므로 그 충격은 적지 않을 것이고, 북한 사회에 대한 실망감과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심은 커질 것이다.

마. 북한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인권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북한이 가입한 유엔인권규범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북한인권의 심각성은 세계가 걱정하는 관심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매년 결의되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를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북한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인권침해가 구체적으로 유엔인권규범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알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결 론

가. 대한변호사협회는 2010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2005년 이후 탈북한 200명에게 북한에서 사는 동안 “이것도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회의를 가져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느낀 적이 자주 있다” 128명(64%), “가끔 느낀 적이 있다” 69명(34.5%), “없다” 3명(1.5%)인 대답을 얻은 바 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8) 최근 김정일의 차남 김정철(30)이 수행원 수십명을 거느리고 싱가포르에서 하룻밤 숙박료가 60만원 하는 특급호텔 스위트룸을 잡고 록가수 에릭 클랩튼의 공연을 1인당 35만짜리 VIP석에서 즐긴 사실 등도 충격을 줄 것이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열증과 반감은 생각보다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환경적 여건의 불충분으로 아직 주위 사람들과 연계하여 행동한다는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내적인 불만과 체제에 대한 반감은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장마당 소식, 남한 영화나 드라마 DVD, CD, USB, 휴대전화(보급률은 1%에 불과하지만 30만 대나 된다), 대북전단(빠라), 대북방송, 탈북자 소식 등 각종매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남한의 발전상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축적될 경우 북한사회에 대한 불만과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은 체제변화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촉발하는 의식적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나. 표면상으로 매우 안정된 것으로 보였던 동독 공산정권이 1989년 무너지고 불과 몇 달 후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억압체제 하에서는 주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단 혁명열기가 점화되기 시작하면 주민들의 생각은 예상밖의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간다. 이것은 이번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집트의 민주혁명 성공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그러므로 정보유입을 통해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특정계층에 의한 부의 독점이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나간다면, 북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은 더욱 강해지고 결국 사회구조를 변혁시키는 거대한 동력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의 이러한 내부적 변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인권문제 해결의 주체적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12월 6일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모든 매체를 통하여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는 역할분담을 하여 정부는 가지고 있는 유휴 자원과 과거 축적한 노하우를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민간단체는 대북방송, IT, 대북전단 등 분야별로 자신들이 갖는 장점을 중심으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알권리, ‘어떻게 전할 수 있나’

발제 : 김흥광 대표(NK지식인연대)
정필운 박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토론 : 이광백 대표(자유조선방송)
하태경 대표(열린북한방송)
이승훈 부장(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유식 대표(디시인사이드)-대담



북한사회와 주민의식의 역동적인 변화실태와 활성화 방안

김흥광 대표(NK지식인연대)

1. 들어가며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와 북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기서 탈북자단체 내지 탈북자들의 노력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탈북자 단체들과 대북언론정보단체들의 활동과 관련된 최근 이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현존 북한체제의 틀 내에서 국제사회의 공조적인 압박을 통하여 북한당국이 스스로 비인권적인 통치를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고, 다음은 외부적 작용을 가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을 깨우쳐 주체적인 인권세력을 형성하여 스스로 인권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정치, 외교, 교류를 포함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이며 효과도 빠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도 북한지도부의 판단과 결심이 선결되어야만 하고 핵문제와 개혁, 개방, 인권문제에서 만큼은 요지부동인 북한지도부를 설득시켜야 하는 대국적인 해결책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바로미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어도 전자에 대한 대안일 수밖에 없고 또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를 통하여 그 생활력과 효과성이 명백하게 증명된 분명한 해결책이다. 상기 두 가지 해결책은 상호보완적이며 필수적임을 전제로 하면서 본 발제를 하려고 한다.

2. 북한변화를 목적으로 한 대북선전물 유입현황

북한주민을 상대로 대북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때로부터 거의 20년이 되어온다. 이 기간 동안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소식을 전해주고 이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기 위해 제작된 많은 방송 콘텐츠들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철옹성을 자랑하는 철의 장막을 뚫고 북한 내부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에 유입되는 콘텐츠는 주로 심리전의 성격이 짙었고 라디오 방송콘텐츠가 압도적이었다. 1990년대 후반, 컴퓨터와 영상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대중용 영상매체시대가 도래하면서 대북 심리전 콘텐츠들은 음성정보로부터 영상정보로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대북용 영상물은 음반, 영화, 전자도서, 애니메이션, 플래시, 학습프로그램, 게임, 전자사전, 앨범, 전자지도를 포함하여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로 늘었다. 또 대북용 콘텐츠를 나르는 매체는 방송, CD, DVD, TAPE, USB, MP3, PMP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북한내부의 상황에 대해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이 존재한다. 대북용 영상물의 급격한 질량적 변화가 오늘날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얼마나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일조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라디오로부터 시작한 대북용 콘텐츠들은 북한주민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킴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1) 대북용 영상물의 종류와 유입현황

대북용 영상물이라 함은 외부세계에서 제작되어 북한내부로 보급되는 디지털영상 정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북한에 현재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는 디지털영상정보로는 영화, 뮤직비디오, E-book, 애니메이션, 게임 및 각종 학습프로그램 등이다.

2010. 4월 NK지식인연대 대북정보센터는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은닉해 있거나 중국에 개인여행을 온 북한주민, 그리고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서 광범하게 쓰이고 있는 대북영상물의 종류는 6가지다.(표-1 참고)

【표-1】 대북영상물의 종류와 분포특징(NK지식인연대 발표, 2010. 4)

종류	유입매체	분포 특징
영화 및 드라마	CD나 DVD, TAPE, USB	40% <
다큐 및 교양시사물	CD나 DVD, TAPE, USB	20% <
음반 및 뮤직비디오	CD나 DVD	20% <
전자도서(E-book)	USB, CD나 DVD	10% <
만화 및 애니메이션	CD나 DVD, USB	5% <
게임, 학습프로그램	USB, CD, DVD	5% <

대북영상물가운데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영화 및 드라마다. 중국조선족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거의 15년 이상 상업적 목적으로 엄청난 양의 CD와 TAPE 조중국경지역을 통해 밀매해 왔다. 한국영화 ‘모래시계’와 헐리우드의 ‘람보’, 영국의 ‘007’을 비롯한 당대의 베스트작들은 북한주민들 속에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들이다. 한편 ‘가을동화’, ‘영웅시대’, ‘제 5공화국’을 비롯해 엄청난 양의 드라마도 비밀리에 유포되었다. 인민보안원(경찰)들에 들키지 않기 위해 휘장이나 모포로 등화관제까지 하고 볼륨을 낮추어 은밀하게 가족이나 친구끼리 모여 돌려보는 한국 드라마와 다크들은 북한주민들에게 개인주의에 기초한 기쁨과 눈물, 사랑과 증오, 삶에 대한 심오한 고민과 이슈를 인식시키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컴퓨터를 활용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 e-Book과 애니메이션, 만화작품을 보는 것이 지식계층과 청소년, 대학생들의 큰 흥밋거리다. 금년 7월 경,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평양시내 대학생들과 지식인들 속에서 오프라인판 ‘위키백과’를 보는 것이 큰 유행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대북용 뉴미디어 작품들이 엄청나게 유포되고 있다.

(사)NK지식인연대 북한지식정보센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떠한 콘텐츠들이 북한내부에서 유도되고 있는지 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 형식	내 용 사 례	설 명
e-book	“세계문학작품선”, “카네기전서” 등 수 백가지	조선어코드에 맞춘 텍스트 기반 매체
디지털매거진	NKIS가 제작한 “지구촌의 창” 등 다수 작품	전용부어, PDF파일
동영상	뮤지컬 “요덕스토리” 공연실황 녹화물	AVI, WMV형식
전자사전	“위키백과”등 best 사전류	오프라인 판
영화	최신 베스트작품	변환된 헐리우드 작이 다수
다큐멘터리	“천의 계단을 넘다”, “21세기 병기” 등 작품	군인, 안전부, 보위원들이 선호
TV프로	“6·15 남북정상회담”, “김정일 방중”	지난 프로그램을 수합한 작품
전자앨범	세계 각국의 문화, 다양한 주제의 앨범집	압축해제파일 첨부
스토리텔링작	NKIS가 제작한 “쿠바는 사회주의인가”	종합적인 뉴미디어 작품
애니메이션	best작, 한국 교양적 주전자신문제의 애니메이션	저작권 양해, 플레이어 첨부
음성소설	세계적인 Best작품의 음성파일	플레이어 첨부
게임	“삼국지”무료판을 비롯하여 다수의 게임	북한의 일반적 컴퓨터 사양 고려
프리웨어	컴퓨터유지보수, 파일관리, 원격지원 툴 등	북한의 컴퓨터사양 고려
e-러닝 교재	수학, 영어, 물리 등 각 과목 교육용 교재	북한 교과내용에 준함
디지털 성경	기독교, 카톨릭 성경	최근에 수요가 급증
기타	“사주백과”, “토정비결”	최근에 수요가 급증

2) 대북용 영상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반향

대북용 영상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반향은 한 마디로 말하여 대단하다. 그 반향을 충칭한다면 대북용 영상물을 통해서 북한체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자신들의 삶의 재발견, 외부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다. 폐쇄적인 사회에서 세뇌를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콘텐츠나 선전물만 접해오다가 대립되는 매우 다양한 주제의 이슈와 감성, 증거와 사실들에 접한 북한주민들은 대북영상물들을 그저 흥미분위로서만이 아닌 콘텐츠 자체에 열광할 수밖에 없다.

전체주의국가의 가치관은 지극히 단조롭고 분명하다. 하지만 대북용 영상물이 전하는 가치는 천태만별이다.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와 사회, 가정과 개인, 경제와 문화

의 모든 영역들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대북용 영상물의 모든 장르들이 충격적이지만 사회성이 강한 북한주민들에게 강렬하게 인지되는 것은 자유와 방종, 사랑과 애정, 열기와 개인주의적 도덕성을 보여주는 영상물들이다.

그렇다고 대북용 영상물들이 처음부터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문화에 대하여 패륜패덕으로 규탄하는 당국의 선전에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대북용 영상물들을 보다가 발각되는 경우 받게 될 엄한 처벌이 대북용 영상물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하였다. 하지만 한 편, 두 편, 대북용 영상물들을 보면서 자신과 주변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가치와 삶의 현장들을 지켜보면서 깊은 충동을 받게 되며 더욱더 많은 사실들과 증거들을 발견하기위해 대북용 영상물들을 찾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시청자들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모습이 북한의 그 체제와 너무도 판이하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놀라울 정도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 차이는 바로 인권과 자유의 차이이며 결국은 정치의 차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이 북한식의 학습과 강연, 일방적인 세뇌교육으로가 아니라 다양한 감성과 정서, 가치를 가지고 전개되는 대북용 영상물은 분명 북한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알아왔던 역사와 현재가 얼마나 비속적이고 거짓이었는데 대하여 통감하게 된다.

무엇보다 대북용 영상물들은 한결 같이 재밌고 흥미롭다. 멜로디는 신비할 정도로 흥취를 돋우고 함께 흥얼거리게 하며 리듬에 맞추다 보면 절로 신이 난다.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팩트들은 진실성이 강하고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만든다.

이처럼 대북용 영상물들이 주는 강렬한 인상과 이해는 오늘날 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만들어 준다. 그것은 오늘날에는 어렵지만 미래에 만들고 싶은 하나의 꿈을 만들어 낸다. 그 꿈은 바로 3대를 거쳐 세습되는 사회주의 북한이 아닌 최소한 남한이나 미국사회처럼 국민이 자유롭고 풍요롭고, 문명한 북한이다. 이를 반영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 2009년 10월에 북한의 최고의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아침 등교시간에 일제히 책가방을 비롯한 소지품 조사를 하였는데 1만 8천명의 대학생 중 2천여 명에게서 대북용 영상물이 든 CD와 USB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3) 북한 당국의 대북영상물에 대한 검열 단속

북한당국은 체제유지와 주민세뇌를 목적으로 북한을 외부세계와 철저히 차단시켜 왔다. 관문들에 설치된 국경세관검사체계, 대북라디오전파차단, 불시적인 가택검사로 인해 북한주민의 외부정보접근성은 세계 최하위수준이다. 북한당국의 이러한 강력통제에도 불구하고 대북영상물들은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북한의 안방들에 유포되고 있어 당국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주민들 속에서 대북용 영상물이 급속히 유포되는 것에 급급해 난 노동당 선전부는 올해 초부터 이를 강력 단속하기 위해 ‘130상무’라는 검열단속조직을 중앙과 지방에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제 북한주민들의 생활에서 대북용 영상물은 떼어 낼 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버려서 북한당국의 어떠한 단속과 처벌, 통제도 그것을 철저히 막아내기 어렵게 되었다. 이를 반증하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최근 평북 정주시에서 고등학생 4명이 친구 집에 모여 외국영화를 시청하다 130상무에 적발되는 바람에 정주시가 발각 뒤집혔다고 한다. 일이 이 정도로 심각해 진 것은 4명의 학생 중 시당 책임비서의 아들도 함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130상무조가 급파되어 책임비서의 가택을 수색한 결과 여러 편의 외국 및 남한영화 CD를 압수했다고 한다. 4명의 학생들은 소년 교양소에 보내졌고, 시당 책임비서는 가족혁명화를 못한 책임으로 해임 철직되었다고 한다.

올해 새로 조직된 ‘130상무단속조’는 보위부와 당 일꾼, 보안원 뿐 아니라 IT기술자들도 망라되어 있고 CD플레이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비밀시청여부를 확인하는 기계까지 활용하여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은 전자파 발신을 차단하는 차폐장치를 고안해서 CD플레이어에 설치하는데 이것만 설치하면 검열을 무난하게 회피할 수 있다고 한다. 대북용 영상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열광과 이를 단속하는 검열 당국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이다.

3.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오늘날 북한주민들은 우매하고 깨어있지 못하며 노예적 굴종에 안주해가며 살아왔던 어제 날의 북한주민들이 아니다. 물론 인권을 되찾기 위한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김정일

을 축출하기 위한 전민항쟁을 벌릴 수 있게 세력화되지는 않았지만 원자화된 상태에서 개개인이 자기와 주변, 그리고 바깥세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비교하고 참다운 정의가 무엇인가를 깨치고 있어 앞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과감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의 이러한 내부적 변화에 응당한 관심을 가지고 내부에 북한인권문제해결의 주체적 역량을 키워주어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외부적인 작용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① 대북언론활동을 강화하여 북한주민들과 지식층, 청년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의식화 시켜야 한다.
 - 대북 텔레비전, 대북 라디오, 대북 전단지, 대북 물자투입을 배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단 현금성 지원은 지양)
- ② 북한주민들의 의식계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내주어야 한다.
 - 현재의 대북 언론활동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보내주어야 한다.
 - 디지털매체의 확산을 위하여 국제사회는 북한에 컴퓨터를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한다.
- ③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해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언론정보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인권의 가치와 세계적 실상들을 알려주어야 함
 -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외부세계의 정보가 끊임없이 흘러들어가야 한다.
 - 북한주민들이 생각과 견해, 글, 목소리가 밖으로 자유롭게 전해져야 한다.
- ④ 북한에 지하교회회를 만드는 사업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 북한주민들에게는 사상보다는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신앙이나 이데아가 필요한

시점

- 지하교회를 많이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북한주민들을 의식화하는 부수적 효과를 달성
- 성경책을 통째로 보내기보다는 설교나 간증, 북한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을 추출하여 보내는 것이 바람직 함(실례로 디지털복음, 설교영상물 등)

4. 북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① 민간차원의 대북 정보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현재 데일리NK, 자유북한, 열린북한, NK지식인연대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단체들이 민간대북정보활동을 과감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발빠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북정보들을 입수하여 대국민 대북언론정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대북언론정보영역에서 민간단체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높아지고 있고 생산해내는 대북정보의 양과 질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시정 극복해야 할 문제들도 산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정보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안들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단체들이 대북정보언론활동에서 객관성, 공정성, 불편부당성, 중립성 등의 규범적 개념과 준칙들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함을 우리 스스로뿐 아니라 여타 단체들에게도 제안하고 싶다.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대북인식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무리수가 오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자면 우선 대북언론정보활동 단체들의 공정한 보도경쟁을 할지라도 북한의 실상과 내부적 실태를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기본적인 행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대북언론정보기관들의 상호의 연계와 커뮤니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메이저 언론들을 향하여 통합적인 정기적인 브리핑 또는 인터뷰를 정례화하여 단체들 사이의 지나친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단체들에서 입수한 정보들을 토대로 개성 있고 색깔이

있는 언론정보활동을 한다면 서로의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며 민간단체들이 대북 언론정보활동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도 상승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민간단체들의 대북언론정보활동에 대한 정부와 메이저 언론사들의 지원과 협조가 따라주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전문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재원이 부족한 민간단체들이 소기의 능력으로 대북언론정보활동을 원만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정부의 관련기관들이나 메이저 언론에서 지원하고 협조한다면 지금보다는 엄청난 양의 정확한 대북실상정보들을 입수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대북정보활동의 대상인 북한에 첨단장비들을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많이 들여보내야 한다.

- 현재 대북정보활동은 결국은 북한군 보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와의 머리싸움이며 장비싸움이기 때문에 IT강국으로서 한국의 능력에 걸맞는 장비들을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한다.
- 중국산 저가격 MP3, DVD, PMP, 아이팟과 같은 정보플레이어 기기들을 더 많이 들여보내 주어야 한다.

③ 북한주민들이 자유자재로 소식을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 북한이 2007년에 이집트의 오라스콤 회사와 협력으로 CDMA방식 이동통신시스템을 도입했고 북한당국도 확대의지를 가지고 있어, 휴대폰 보급대수도 30만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 대북지원형식으로 한국의 중고핸드폰을 많이 보내주면 북한주민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 북한 내에 중국에서 들여보낸 음반, 영화, 도서를 서로 돌려가며 보기위해 생겨난 음성적인 CD교환시장이 커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활용하고 그 폭을 넓히기 위한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④ 북한의 전문분야종사자들을 탈북시켜 한국에 데려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거의 2만명, 이중에서 고학력자, 전문분야 종사자는 5%이다. 북한주민들이 10만명만 탈북하여도 북한내부에서는 대 소동이 일어나며 특히 전문직들이 대거 탈북하면 이들을 통해서 매우 디테일한 수준에서 북한

체제의 작동메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다.

5. 이러한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 ① 정치권부터 북한인권문제해결을 대북정책위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정치적 소신과 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많은 경우 북한문제는 대의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당리당락을 추구하여 정부나 당의 명분쌓기, 경쟁력 우위점유를 위한 소유물로 전락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렇게 대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동안 국민의 대북관심은 멀어져버렸고 청소년들 속에서는 북한을 우리나라가 아닌 이웃나라로 오해하는 것이 보통인 정도로 되었다.
- ② 대북언론정보활동,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민간단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결정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수많은 대북인권단체들은 처참한 북한인권실상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아무런 재원도 없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얼핏보면 북한인권 활동이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북한이 문을 더 닫아매게 하는 듯싶지만 사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북한의 주민의식은 정말로 하루가 멀다하게 급격히 쇠신되어가고 있다. 당장이라도 정부는 대북지원예산의 1%정도라도 대북인권 및 북한민주화단체들의 활동에 돌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북한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기아와 함께 정신적 기아를 해결하는 것이다. 쌀만 준다고 북한주민들이 결코 기아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정신적 기아에서 해방시켜 자생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의식을 주어야 한다.
- ③ 대북인권단체들의 단결과 협력, 긴밀한 커뮤니티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대북인권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언제부터인가 이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명분의 총연합, 총연대 등 총괄조직 구축에 급급하는 모습이 일부있다. 당연히 대북인권단체들의 활동강화를 목적으로 한 신속한 정보의 공유, 경험의 교류, 사업의 협동이 필요하지만 혹시 있을지모를 헤게모니를 위한 단결, 이익극대화를 위한 협력은 철저하게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실현하여야 한다.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채택되어 발효되면 사실상 위에서 제기한 많은 문제들이 큰 탄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다.
- ⑤ 북한인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과 같은 상설적인 기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재단이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되거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북한인권 활동이 소수단체의 이익 활동으로 오해되고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인권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운영은 철저히 사회화되어야 하며 모두에 의하여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6. 결어

이제 더 이상 북한인권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통일선결사업이다. 국제적인 공조와 한국, 탈북자들의 활동이 강화되어 북한주민의 인권문제가 일정 수준에서만 해결되기 시작하여도 악몽에서 깨어난 북한주민들은 자진 노력과 외부의 지원으로 끝내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거족적인 정의의 투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한 마디로 비유하여 북한의 내부적 실태는 바깥 마른 짚더미와 같다. 단 누구든지 먼저 불을 붙여주어야 한다. 밖에서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착화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역할을 바로 대북인권단체, 북한민주화단체들이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 강도가 약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없어도 점차 활동을 확대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전투력도 강해져 머지않은 시기에 북한의 격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념이 더욱 커진다.

최근 중동 최장 독재자이던 이집트의 무바라크가 국민들의 대중적 반정부투쟁으로 30년간의 폭정을 끝내고 권자에서 물러났다. 이것은 독재정권하에서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이집트 국민들이 피 흘리는 투쟁을 통하여 쟁취 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폭정이 없는 삶을 시작이어서 보다 귀중하고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이집트사태는 독재정권하의 국민들이 가증스러운 폭정과 독재를 끝장낼 것을 일구웁심 바라고 투쟁한다면 하늘도 돕는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북한주민들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시대에 오직 북한만이 독재자의 광기와 폭정에 숨을 죽이며 살고 있고, 마소보다 못한 최악의

삶의 상황에서 얼마나 더 고통 받고 신음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통감하고 독재의 쇄사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누구든 피를 바쳐야 하고 바로 진정한 인간적인 삶을 위한 대가를 들여야만 비로소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각인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의 주민의식 발달과 항거정신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고무적이다. 우리는 북한사회의 민주주의 의식개변과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출현을 장려해야 하며 이에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야 한다.

북한지역에 대한 방송 확대: 기술적·법적 가능성 검토*

정필운** 박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I. 머리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개선 로드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하나로, 북한지역에 방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방송은 많은 정보를 알려 사회변화의 동인이 된다. 동서독 통일에 방송의 기여가 대표적인 예이다. 통독 전 동독 주민의 85%가 서독의 텔레비전(TV)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통일의 가장 큰 밑거름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¹⁾

미국이 쿠바에 대하여 30년 동안 라디오 방송을 하고, 1990년부터는 TV방송을 송출하고, 쿠바가 이를 전파 방해(jamming)를 통하여 막으려고 했던 것도 동서독과는 다른 측면에서 국경을 넘은 방송 송출의 위력을 웅변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²⁾

전언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을 즐겨본다고 한다. 특히 2007년 뉴욕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북한에 우리 드라마가 유행하여, 북한 주

* 이 글은 2011년 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되는 『북한인권 개선 공청회: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방안』의 발제를 위한 글입니다. 이 발제문에서 제시된 일체의 견해는 필자 개인의 연구에 기반한 개인적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통신연구부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1) 이우승, 방송전파 월경에 따른 동·서독 주민의 시청태도와 방송정책,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6권 제2호, 2006년 겨울.

2) 미국과 쿠바의 전파 전쟁, MBC 가이드, 칼럼, 1990년 4월호, <http://cue.imbc.com/Common/Publish.aspx?Idx=7984> (2010.2.10 최종방문)

민들 사이에서 한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말투를 흉내내며 행동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 북한 정권이 이를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언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상하는 것처럼, 북한지역에 방송을 확대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동인(dynamics)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북한지역에 방송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지역에 아날로그 TV 및 디지털 TV 방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술적·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민간대북방송의 현황 및 민간대북방송을 확대하는 것이 기술적·법적 관점에서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

II. 북한지역에 텔레비전 방송 송출의 가능성

1. 기술적 가능성 검토

(1) 아날로그 TV

남북한은 아날로그 컬러TV방송의 전파송출방식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중국과 같은 PAL(Phase Alternating Line) 방식이다. 따라서 북한 수상기를 통하여 남한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주로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입한 중고 TV를 통해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고 한다.⁴⁾ 중국에서 수입한 중고 TV는 같은 PAL 방식이기 때문에 청취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전파송출방식이 NTSC으로 컨버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PAL과 NTSC 겸용으로 수신 가능한 TV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⁵⁾⁶⁾

3)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고려는 배제한다.

4) http://cjsclub.co.kr/story/story_01_view.php?nno=9520&start=253&search=&search_text= (2010.2.9 최종방문)

5) 양 방식은 TV수상기·비디오테이프·CCTV 카메라 등 연관기기 모두 어느 호환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지난 1953년 NTSC를 아날로그 컬러TV방송 송출방식으로 정했다. 당시 서독은 초당 30프레임을 전송하는 NTSC의 전송률을 25프레임으로 낮추고 대신 해상도를 우리나라가 채택한 525라인 주사선보다 조금 높은 PAL을 제안한다. 여차피 인간의 시각은 25프레임이나 30프레임의 미묘한 차이는 잔상효과 때문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북한에서 우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i) 우리가 PAL(Phase Alternating Line) 방식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지역 내에 중계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출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 경우 북한이 방해전파를 송출(jamming)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전력사정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ii) 우리는 NTSC방식으로 송출을 하고, 북한 수상기에서 컨버터를 통하여 PAL방식으로 변경하여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존의 수상기에 컨버터를 제공하여 부착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iii) 두 번째 방법과 비슷하게, 우리는 NTSC방식으로 송출을 하고, 북한에 PAL방식이나 PAL과 NTSC 겸용으로 수신이 가능한 TV수상기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수상기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2) 디지털 TV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TV 방송으로 전환을 확정하였다.⁷⁾ 우리는 디지털TV의 전파송출방식은 미국 방식인 ATSC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현재로서는 디지털 TV전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우리가 완전히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 디지털TV 또는 별도의 컨버터 없이 시청

구분하지 못한다. 유럽은 서독이 제안한 PAL 방식을 채택하였다. 2차 대전의 최대 피해자이자 승전국이기도 한 프랑스는 독일에 첨단기술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의도에서 SECAM을 제안한다. SECAM은 TV수상기가 비싸고 시청 범위가 좁다. 그러나 이데올로기가 SECAM을 살렸다. 서방의 전파 월경을 우려한 당시 소련과 동독 등 동구 공산권 블록은 그들과 접경한 나라들이 사용하는 PAL이 아닌 SECAM을 채택했다. SECAM은 PAL 방식에 보다 근접하여 어느 정도의 호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는 PAL 방식이 좀 더 널리 퍼져있다. 이상 최연성, 남한은 NTSC, 북한은 PAL, [http://www.cctvkorea.com/sub_02_02view.htm?id=15&table=news02\(2011.2.10](http://www.cctvkorea.com/sub_02_02view.htm?id=15&table=news02(2011.2.10) 최종방문)

- 6) 북한의 컬러TV 보급률은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가장 흔한 TV기종은 ‘진달래’인데 많은 부품을 일제에 의존하고 있다. 이상 최연성, 앞의 글.
- 7)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준비하고 있다.
- 8) 아날로그 TV의 송출방식선택의 예를 보면, 북한은 디지털TV의 전파송출방식도 미국 방식인 ATSC가 아닌, 유럽 방식인 DVB를 채택할 확률이 높다.

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디지털 방송은 이를 송출하여도 북한지역에서 수신할 확률은 거의 없다. 오히려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은 비의도적인 전파월경을 적극적으로 수신하고 있는 북한의 일부 시청마저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편 우리가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하면 기존의 아날로그 TV방송을 위한 장비들은 대거 철수를 할 것이므로, 만약 북한에 아날로그 TV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비를 유지하여야 하는 부담도 존재한다.⁹⁾

2. 법적 가능성 검토

(1) 북한지역의 법적 지위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북한지역에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헌법 제3조는 명확하게 답하고 있지 못하다.¹⁰⁾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도 이 같은 태도를 수용하고 있다(법 제3조 제2항).

그러나 국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미승인국의 지위에 있다. 미승인국은 국제법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제법은 국가간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승인국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¹¹⁾ 동서독 간에도 이와 같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북한지역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국내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수관계론에 입각한 해석이 필요하며, 국제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에 준하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9) 방송 제작시설 및 편집시설, 송출시설 중 많은 시설(HD 카메라, 증폭기, 송출안테나 등)은 교체되어야 한다. 수신시설은 교체하거나, 안테나를 교체하고 컨버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10, 168쪽.

11) 제성호, 북한방송 개방의 방법론과 법적 문제, 통일정책연구 8,1(1999년 12월), 통일연구원, 1999, 66쪽.

(2) 현행 국내법상 제한

북한지역에 방송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 국내법은 「방송법」, 「전파법」 등의 방송통신법, 「형법」,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 대북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있다.

일단 북한에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제9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 허가는 사용주파수, 송출지역 등을 명시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신규 지상파방송사업은 물론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도 북한지역에 방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상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우리가 논하는 북한 지역에 방송 송출 행위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국가보안법」 등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¹²⁾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고(법 제1조),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만 있으므로 그 적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허락을 전제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므로 형법, 국가보안법 등의 적용은 배제할 수 있다.

(3) 현행 국제법상 제한

가. 논의 현황 및 국제방송통신법상 제한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방송송출을 하는데 수신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신국과 협의로 충분한지, 수신국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송출이 가능한지는 국제법상 큰 쟁점 중 하나라고 하면서, 이에 관하여 아직 확립된 견해는 없다고 보고되고

12) 그럼에도 판단에 따라서는 그 적용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형법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모자이크 이론을 인정한다면 방송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해당할 수도 있다.

있다.¹³⁾

그러나 이것은 국제전파법을 고려하지 않은 견해로, 방송을 송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¹⁴⁾의 헌장(Constitution) 및 협약(Convention), 그리고 전파규칙(RR; Radio Regulations)에 따라 사용되고, ITU의 다른 회원국의 전파업무 또는 무선통신업무에 대하여 유해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설치되고 운용되어야 한다(헌장 제1조 제197호; RR 0.3 참고) 따라서 북한에 방송 송출을 하기 위하여 전파규칙상의 제한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전파규칙상의 제한

(가) 전파규칙 제15조에 따른 의무 부과

제15조 혼신(interference)

15.1 §1 모든 무선국에게 불필요한 송신, 필요이상의 여분의 신호의 송신, 잇아신호 또는 수신목적의 신호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거짓신호의 송신, 또는 식별신호 없는 송신(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함)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15.2 §2 송신국은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전력만을 복사하여야 한다.

15.3 §3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15.4 a) 송신국의 위치와 업무의 성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신국의 위치는 각별히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15.5 b) 불필요한 방향으로의 복사와 불필요한 방향으로부터의 수신은 업무의 성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지향성안테나 특성의 실제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최소화하여야 한다.

13) 제성호, 앞의 글, 66쪽.

14) 전기통신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피할 목적으로 만든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이다.

15.10 §6 송신국의 대역의 발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접주파수대에서 운용하고 3.3, 3.11, 3.12와 3.13 및 관련 ITU-R 권고와 일치하는 수신기를 사용하는 업무에 대하여 유해혼신을 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전파규칙 제23조에 의한 의무 부과

제23조 방송업무(Broadcasting Services)

제 I 절 - 방송업무

23.1 A - 총칙

23.3 2) 원칙적으로 3,900 - 4,000 kHz의 주파수대내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국을 제외하고는 5060 kHz 이하의 주파수 또는 41 kHz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국은 관계국가의 국경이내에서 양질의 효과적인 국내방송업무를 경제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전력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15조에 의한 위반에 대한 해결 절차

제 V 절 - 위반사례의 보고

15.19 §11 헌장, 협약 또는 전파규칙의 위반을 탐지한 감독기관(통제기관), 무선국, 검사관은 각각의 소속 주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목적으로 보고하는 기관과 개인은 부록 9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15.20 §12 어떤 무선국에 의한 중대한 위반에 관한 항의는 그것을 탐지한 주관청에 의하여 당해 무선국을 관할하는 국가의 주관청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15.21 §13 만약 주관청이 그 관할하에 있는 무선국에 의하여 범하여진 협약 또는 전파규칙의 위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VI 절 - 유해혼신문제의 해결절차

15.22 §14 모든 회원국이 헌장의 제45조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한

의 호의와 상호협력을 발휘하는 것이 유해혼신문제의 해결에 필수불가결하다.

15.25 §17 모든 주관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이 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적용하여 유해혼신의 탐지와 제거에 협력하여야 한다.

15.26 §18 실행가능하고 관계주관청 간에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각 주관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감시국에 의하여 유해혼신사태가 직접 처리 되거나 또는 각 주관청 관할하의 운용기관 상호간의 직접 조정(direct cordination)을 통하여 처리될 수 있다.

15.30 §22 그러한 유해혼신의 사례가 수신국에 의하여 보고되는 경우에는 그 수신국은 혼신을 받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송신국에게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송신국이 혼신원과 혼신의 특성을 식별하고 결정하는데 조력하여야 한다.

15.31 §23 만약 수신국에 의하여 보고된 유해혼신이 보고된 바와 같은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수신국을 관할하는 유해혼신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유해혼신을 받고 있으며 그것을 보고한 수신국을 관할하는 주관청은 간섭을 받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송신국을 관할하는 주관청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고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5.39 §31 만약 이 절에 규정되어 있는 위의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해혼신이 제거되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혼신을 받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송신국의 관할 주관청은 혼신을 야기하고 있는 무선국의 관할 주관청에게 제V절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위반 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송부할 수 있다.

15.41 §33 1) 만약 관계주관청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경우와 특히 만약 이절에 규

정되어 있는 위의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관계주관청은 그러한 유해혼신의 사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전파통신국으로 제출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5.42 2)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계주관청은 전파통신국에게 제13조 제 I 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관계주관청은 모든 기술적 및 운용상의 상세한 내용과 통신연락문의 사본을 포함하는 그 유해혼신사례에 관한 진상을 전파통신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13조 제 I 절에 따른 위반에 대한 해결 절차

제13조 전파통신국에 대한 지시사항

제 I 절 - 전파통신국에 의하여 주관청에게 제공되는 원조

13.1 제9조와 제11조 그리고 부록 30, 30A 및 30B의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관청이 있으면 전파통신국은 그러한 주관청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2 유해혼신의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관청이 전파통신국의 원조를 요청하면 전파통신국은 그 주관청의 요청에 따라 그 간섭을 야기하는 간섭원을 확인(색출)하는데 조력하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있는 주관청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각 주관청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가 심의·판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3 전파규칙의 위반 또는 저촉 사례를 보고하는 주관청이 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 전파통신국은 그 재량에 속하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보고된 위반 또는 저촉혐의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주관청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가 심의·판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요컨대 전파규칙은 전파를 사용하는 국가에 대하여 혼신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송신하는 나라에 대하여 직접 조정을 요청하여 해결하거나, 수신하는 나라가 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 전파통신국이 재량에 따라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관계되는 나라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파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지역에 전파를 송출하면 북한은 우리나라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ITU에 조정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4) 남북기본합의서에 배치되는가?

남북기본합의서¹⁵⁾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로,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며,¹⁶⁾ 이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¹⁷⁾ 결국 남북기본합의서에 배치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제16조에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북한에 방송 송출을 하는 것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인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¹⁸⁾하는데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여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

15)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

16) 현재 1997. 1. 16. 92헌바6등, 판례집 9-1, 1, 23.

17)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18) 남북기본합의서 전문(前文) 참고.

지 아니한다(제4조)”고 합의하였으므로, 북한에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에도 비방·중상 같은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Ⅲ. 북한지역에 라디오 방송 확대의 가능성

1. KBS한민족방송의 현황

KBS한민족 방송은 한국방송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국제방송으로, 대한민국과 북한, 일본과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민족이 주청취 대상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반공 방송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방송 내용에는 뉴스, 해설, 보도가 많지만,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옛 노래와 대중가요가 많으며 이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1972년부터 사용하여 오던 사회교육방송이란 명칭이, 2007년 8월 15일에 한민족방송으로 변경되었다.¹⁹⁾ 현재 한민족 제1방송과 한민족 제2방송이 방송을 하고 있다.

제1방송은 호출부호, HLCA를 사용하고 있고, 당진송신소와 화성송신소에서 송신하고 있으며, 당진송신소는 AM 972kHz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고(출력은 주간 250kW, 야간 500kW), 화성송신소는 단파 6015kHz를 사용하고 있다.

제2방송은 HLSR이라는 호출부호를 사용하고 있고, 전북 김제 송신소에서 송신하고 있으며, AM 1170kHz의 주파수를 500KW의 출력으로 송신하고 있다. 제2방송은 19:00~23:00에 KBS 월드 라디오의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프로그램을 방송한다.²⁰⁾

19) 사회교육방송의 역사 및 활동에 관해서 자세한 것은 이우승, 통일방송론, 한울아카데미, 2005, 135-175쪽 참고.

20) 이상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87728#.EC.B0.B8.EC.A1.B0> (2010.2.12 최종 방문)

2. 민간대북방송의 현황²¹⁾

민간대북방송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북한의 청취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 현재 열린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단파나 중파를 이용하여 방송한다.

민간대북방송은 2000년 초반 정부의 대북방송이 약화되던 시기에 이를 대체하고, 북한 인권 운동이 활발해진 것을 배경으로 출현하였다.

열린북한방송²²⁾은 대한민국에서 개국한 민간대북방송 제1호로서, 2005년 9월 미국의 NGO 단체로 등록하고 단파 5880kHz 1개를 임대했으며, 그 해 12월 개국하였다. 최초에는 자유북한방송과 자유조선방송의 프로그램 송출을 대행하는 대북방송 중계사업자로 주된 기능을 하였으나, 이후 자유북한방송과 자유조선방송이 독자적으로 주파수를 확보하면서 중계 사업을 중단하고 자체 제작한 방송과 외부 제공의 프로그램 등을 구성, 독자적인 방송을 북조선을 향해 내보내고 있다. 또한 2009년 북한전문 소식지인 “열린북한통신”을 창간하여 남한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주파수는 시간대 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04:00~05:00에는 FM 92.3 MHz를, 06:00~07:00에는 단파 7480kHz를, 23:00~00:00에는 단파 11570kHz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하와이에서 송출하고 있다.

열린북한방송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북한 주민들에게 사회, 경제, 문화, 인권 등 한국과 세계의 다양한 가치와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방송. 둘째, 북한 동포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방송. 셋째, 남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공동체방송이 그것이다.

열린북한방송이 다른 민간 방송사들과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참여방송’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북한방송은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 누구나 자기 의사를 처벌의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견

21) 이하 민간대북방송의 현황은 열린북한방송의 하태경 대표님, 전근배 PD님이 주신 자료를 요약하여 실은 것입니다. 지면을 통해서 하태경 대표님, 전근배 PD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2) <http://www.nkradio.org/>(2010.2.14 최종방문)

해에 상관없이 방송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자유조선방송은 북한의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방송을 표방하고 있다. 방송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에게 정확한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둘째,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해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셋째, 개혁개방과 민주화의 필요성을 알림으로써 북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넷째, 장기적으로 남과 북, 해외동포가 공동운영하는 ‘한반도 통일방송’을 지향하고 있다.²³⁾

방송 청취 대상인 북한주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조선어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04년 설립을 시작으로 2005년 12월 5일 첫 단파방송을 시작했다.

자유북한방송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제작하는 방송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탈북자들이 운영하다보니 북한 청취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데 유리하고 정서적으로도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장점²⁴⁾으로 꼽고 있다. 또한 KBS 구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을 그대로 들여와 북한체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북한개혁방송은 북한 내 변화를 주도할 핵심 세력인 간부와 장교, 지식인, 청년, 대학생들을 주요 청취자, 시청자로 정하고 그들에게 변화와 개혁, 개방을 위한 비전과 방법, 지혜와 용기를 전해주는 방송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즉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핵심세력을 겨냥한 방송을 표방하며 특히 개혁과 개방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리더십을 개발하여 개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개혁방송은 2006년 개국준비를 시작해 2007년 12월 24일 첫 단파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였고, 2009년 11월부터는 “눈과 귀로 개혁·개방을 전한다”는 새로운 비전으로 영상뉴스와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다양한 영상미디어를 DVD에 담아 북한으로 들여보내고 있다.²⁵⁾

23) http://www.rfchosun.org/page/intro_rule.php (2010.2.18 최종방문)

24) 김대성, “대북 라디오방송 오늘과 내일”, 데일리NK, 2009.3.30.

3. 민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술적·법적 문제 검토

(1) AM 주파수대역의 일부를 활용한 민간대북방송의 가능성

AM 주파수대역을 이용한 라디오 방송은 현재 많은 국민이 잘 듣지 않으므로, 이를 회수하여 민간대북방송에게 할당(assignment)하자는 제안이 있다.

이미 KBS한민족 제1방송이 AM 972kHz의 주파수대역을 이용하여 송신을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제안이 기술적으로는 실현가능하다. 동태적으로는 법적인 관점에서 위에서 고찰한 전파규칙상 쟁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아날로그 TV 주파수대역의 일부를 활용한 민간대북방송의 가능성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TV가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의 현황과 계획은 다음과 같다.

- (현황)



- (아날로그 종료이후) DTV는 470MHz~698MHz 대역(38개 채널) 내에서 사용



기존의 아날로그 TV 대역은 원래 방송 및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 예정이었으나, 이를 반납하여야 하는 방송국에서는 MMS(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을 위해 사용하기를 희망하

25) <http://www.nkreform.com/intro.asp#>

고 있으며, 현재까지 논의 중이다.

따라서 기존의 아날로그 TV 주파수대역의 일부를 민간대북방송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 경우 북한지역 내에 중계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출력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이 방해전파를 송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전력사정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 경우는 전파가 북한에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도달하여 법적·외교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연구 후 실행이 필요하다.

IV.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 주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하여 방송을 위한 전파를 송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것을 북한 주민이 그대로 수신하는 데는 기술적 난점이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국제법인 ITU 전파규칙상의 쟁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진지하게 고려하여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성 DMB를 통하여 방송을 하는 것이나,²⁶⁾ 국내 방송프로그램을 USB에 내장하여 이를 북한지역에 보내는 방법이 그것이다.

우리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주체이다. 표현의 자유는 그 안에 내재된 객관적 질서형성의 기능에 따라 알 권리의 근거가 되므로, 북한 주민도 알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통치권이 실효적으로 미치지 못하여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는 현실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

26) 위성방송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Steven Ruth, The Regulation of Spillover Transmissions from Direct Broadcast Satellites in Europe, 42 Fed. Comm. L. J. 107 1989-1990 참고.

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동서독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방송은 많은 정보를 알려 사회변화의 결정적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윤철상, 통일 지향적 방송을 위한 정책 방안, 윤철상의원실, 2003.
- 이우승, 통일방송론, 한울아카데미, 2005.
- 이우승, 방송전과 월경에 따른 동·서독 주민의 시청태도와 방송정책, 한·독 사회과학
논총, 제16권 제2호, 2006년 겨울.
-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10.
- 제성호, 북한방송 개방의 방법론과 법적 문제, 통일정책연구 8,1(1999년 12월), 통일연구원,
1999.
- Carl Q. Christol, Prospects for an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Direct Television Broadcast,
34 Int'l & Comp. L. Q. 142, 1985
- Rochelle B. Price, Jamming and the Law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5 Michig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egal Studies 391, 1984.
- Steven Ruth, The Regulation of Spillover Transmissions from Direct Broadcast Satellites in
Europe, 42 Fed. Comm. L. J. 107 1989-1990

대북방송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토론문-

이광백 대표(자유조선방송)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1) 북한사회와 주민의식의 역동적 변화 실태

라디오방송, 음반, 영화, 드라마, 전자도서, 전자사진, 학습프로그램,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북한으로 외부 정보가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생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게 한 발표임.

인터넷에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컴퓨터 보급률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주목됨.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 주민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디지털정보 유입 활동이 점차 중요할 것으로 보임.

내용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외부 정보 자체가 북한 주민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 그와 같은 현상은 외부 정보가 북한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 대북언론 및 북한인권단체들의 협력 강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북한인권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 설립과 공정한 운영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

2) 북한지역에 대한 대북 방송 송출: 기술적, 법적 가능성 검토

대북방송에 대한 꼼꼼한 기술적 법적 검토는 대북방송사의 활동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기술적인 어려움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음.

예를 들어 대북방송사들이 북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PAL방식으로 대북방송을 송출하려고 한다면 기술적, 법률적, 재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음.

2. 대북방송 강화를 위한 과제

1) 방송규모를 대폭 강화해야

- 현재 1~2시간에 불과한 방송시간으로는 북한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데 한계가 있음.
- 민간대북방송사의 현재 인력 규모는 대략 10여명. 이와 같은 규모로 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주파수의 수도 각 방송사당 2~3개 정도에 불과해 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좋은 음질로 방송을 듣는데 어려움이 많음.
- 방송 시간 및 주파수, 인력 등 모든 영역에서 단기적으로는 현재규모의 2~3배 증장기적으로는 현재 규모의 5~10배 정도로 확대해야 북한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방송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대북방송에 대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

- 현재 대부분의 민간대북방송의 경우 현행 방송법이 요구하는 등록 여건을 갖추지 못해 방송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 이 때문에 기형적으로 통일부 등 북한관련부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해 방송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 때문에 방송사업에 걸맞는 활동에 제약이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방송법 개정이나 대북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대북방송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

3) 대북방송사의 전문성 강화

- 현재 민간대북방송에는 방송전문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우선은 탈북자 출신 가운데 방송 경험을 가진 인력을 발굴하고 다음은 남한의 방송전문인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방송사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어 줄 필요가 있음.

4) 시설과 장비 강화

- 현재 대부분의 대북방송사는 1개 정도의 간이 스튜디오에 소형 녹음 및 편집장비를 이용하는 아마추어 방송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
- 양질의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전문 스튜디오와 고급 장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3. 정부의 지원

- 우리 사회에서 대북방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크게 부족한 상황. 또 대북방송의 특성상 광고 등을 비롯한 수익사업이 어려움.
- 이 때문에 대북방송사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대북방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이슈가 생길 때, 일시적인 소규모 지원으로는 대북방송을 강화할 수도 없으며, 대북방송을 통해 북한주민의 의식과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도 어려움. 좀 더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대북방송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음.

북한 주민 한국 TV 방송 시청 현황과 확산 방안

-토론문-

하태경 대표(열린북한방송)

1. 북한 주민 한국 TV 시청 현황

- 북한 주민들 중 한국 TV(KBS)를 시청하는 사람들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대체로 개성, 황해남북도, 강원도 일부 주민들은 TV 시청이 가능함.
- 평양에서도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서는 한국 TV 시청이 가능함.
- 한국의 TV는 NTSC 방식, 북한은 PAL 방식이라 시청이 불가능했으나 중국에서 NTSC-PAL 겸용 TV가 다량 보급되어 시청하는 주민들이 증가함.
- 일부 주민들은 한국 드라마 등을 녹화, 복사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재판매하고 있음.
- 정전이 되어도 차량 배터리를 이용해서 TV를 볼 수 있는 소형액정TV(12인치와 14인치)가 인기.
- 위성 DMB 방송은 북한 전역에서 시청이 가능함.
- 그러나 위성 DMB 방송은 요금을 내야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요금을 대신 내주는 사람이 없다면 시청이 불가능함.

2. 한국 TV 북한 내 확산 방안

1) 기존 KBS 방송

- 2012년 디지털 전환 후에도 북한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게 아날로그 방식을 일부 남

- 겨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전환시 북한 주민들에게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를 보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위성 DMB

- 위성 DMB는 요금을 내야한다는 문제가 있음.
- 때문에 누군가 요금을 내주지 않으면 북한 주민 시청 불가함.

3) 지상파 DMB

- 지상파 DMB는 요금이 무료임.
-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중고 스마트폰이 대량으로 나오고 있음. DMB 시청이 가능한 중고폰을 북한 내부로 보급하고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DMB 송출 시설을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중국 스마트폰의 북한 내 확산

- 현재 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5,000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 중국 내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북한 내에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이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 스마트폰에서 한글을 치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트위터, 페이스북하는 북한 주민들도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 있음.

3. 라디오, TV 외 미디어

-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라디오, TV 외에도 다양한 IT 기기가 보급되어 있음.
- CD, DVD, USB, MP3, MP4, PMP 등도 확산되고 있음.
- 한국 TV를 직접 시청하는 사람들에 비해 위의 IT 기기들을 이용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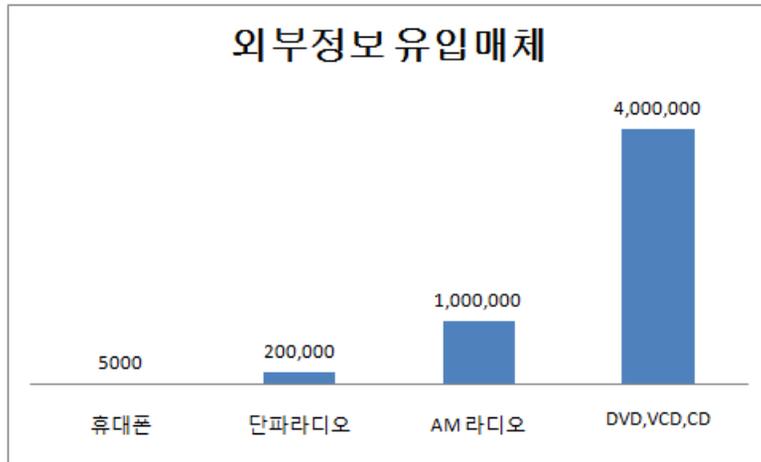
- 이란 혁명은 호메이니 연설을 테이프에 녹음해서 이란 내로 반입하면 내부에서 대량 복제하여 전국으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가능했음.
- 북한 내부에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이 가능함.

4. 발표문에 대한 몇 가지 코멘트와 질문

- 민간대북방송은 팩트에 기반한 방송을 하고 있음. 이걸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 북한의 프로파간다 방송, 즉 팩트도 주저하지 않고 왜곡하는 비방, 중상 방송과 기본적으로 다름.
- 대북방송은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
- 때문에 북한은 현재 남북합의서 정신을 위반하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민간 대북방송은 그렇지 않음.
- 북한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을 반드시 방통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ex, 산란 FM 방송, 북한향 지상파 DMB 방송)
- 아날로그-디지털 겸용 TV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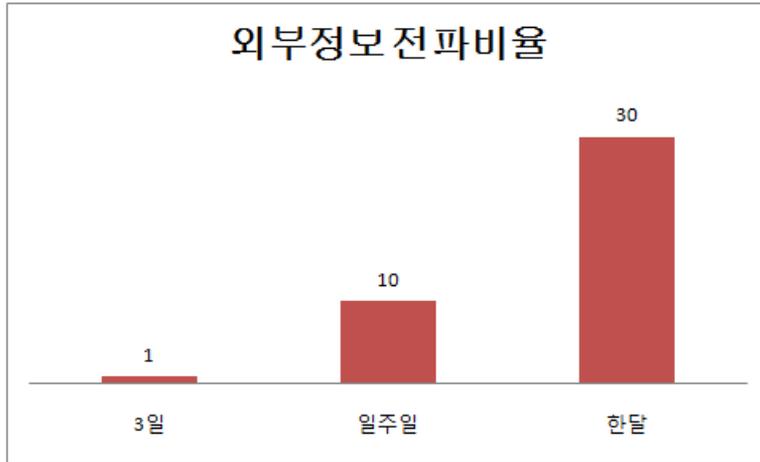
보론) 북한 주민 외부 미디어 사용 현황

□ 외부정보 유입 매체



매 체	추정인원(명)
북중 국경지역 휴대폰(손전화)	5,000
단파 라디오	20만
AM 라디오	100만
DVD, VCD, CD	400만

□ 외부정보 전파비율(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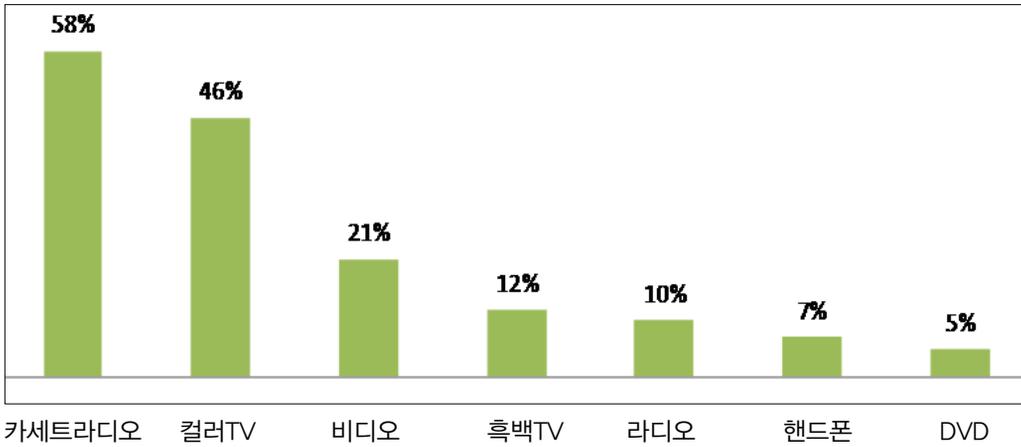
기 간	추정비율(명)
3일	1%
1주일	10%
한 달	30%

국내, 중국내 탈북자 250명 대상 설문조사
(외국 라디오방송 청취경험자 5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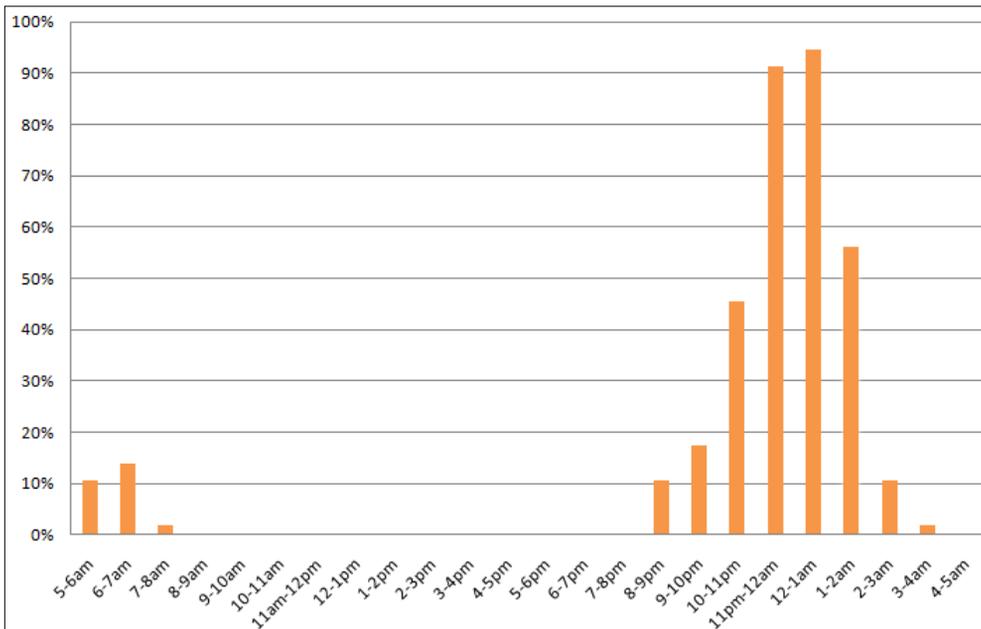
<250명 탈북자들의 탈북 년도>

2006년 탈북	46명	* 본 내용은 '인터미디어'사에서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중국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입니다. www.InterMedia.org
2007년 탈북	90명	
2008년 탈북	83명	
2009년 탈북	31명	
총 인원	2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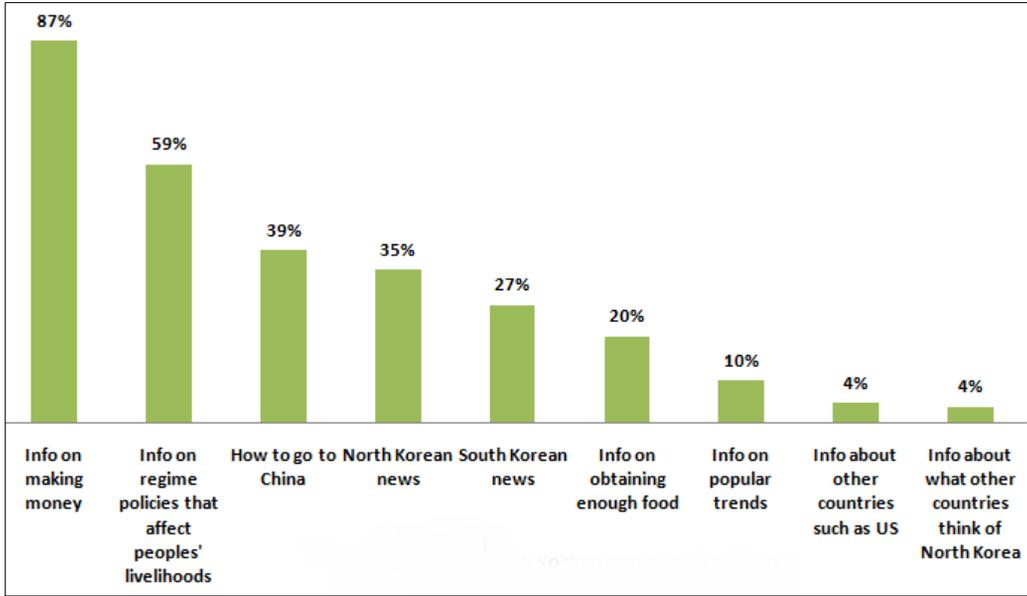
<북한 내 미디어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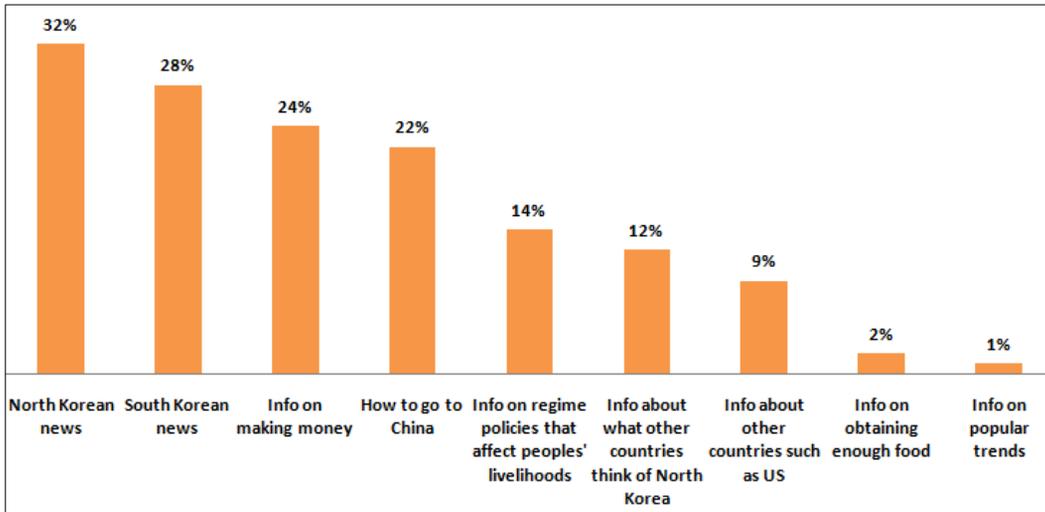
<외국 라디오 청취 시간(청취 경험 있는 57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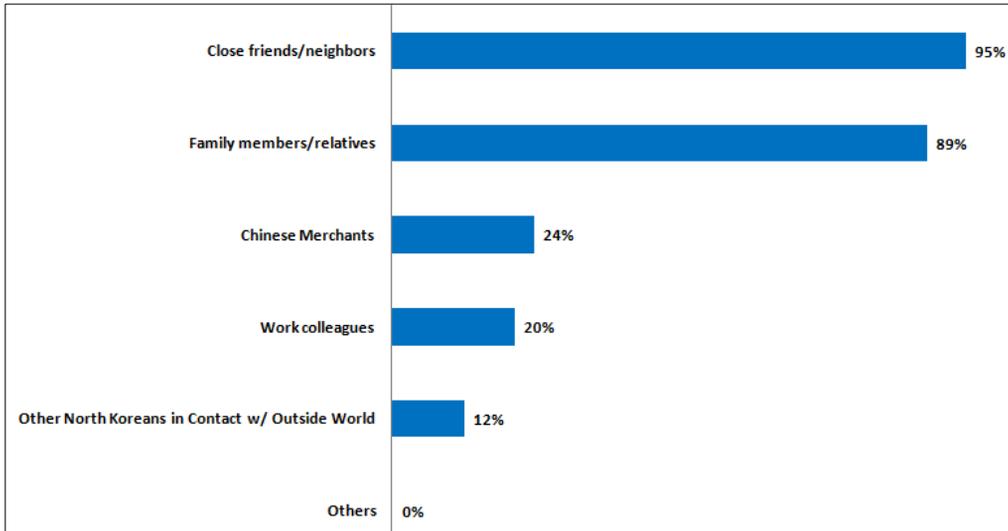
<북한 내에서 유용했던 정보>



<외국 라디오 청취로 얻고 싶은 정보>



<주요 정보를 얻는 인적 방법>



북한지역에 대한 방송송출에 관한 -토론문-

이승훈 부장(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하여 방송을 위한 전파를 송출하는 것을 가능하지만, 기술적인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발제문에 관하여 몇 가지 의견과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 등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TV 방송 시청과 관련하여 전파송출 방식이 다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파송출 방식이 같은 경우에도 방송신호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송출하기 위해서는 중계기 설치가 필요하다. 남한에서 북한지역으로 TV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발제문에서도 지적하듯이, 전파송출 방식과 중계기 설치 등에 관하여 북한 당국의 협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에서 TV 방송 전파를 송출할 경우, 북한의 TV 수상기에 컨버터 부착 또는 두 가지 방식의 겸용 수상기 제공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북한 당국의 협조와 경제적 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방송 송출 관련해서 국내법 측면에서 방송법, 전파법 등의 방송통신법과 형법,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대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있다. 발제문에서는 북한에 방송을 송출하는 행위에 관하여 국내법 측면에서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방송통신 관련 법령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북한관계법에서는 방송 송출 행위에 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TV 방송의 송출 행위에 관한 내용과 함께 송출 내용측면에서는 대북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남한의 기간산업에 관한 정보, 중요 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TV 방송 내용으로 송출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이용 관련 국가간 협력 및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적 조약으로 ITU의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이 있다. ITU는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회원국간의 국제협력 유지·증진,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기술설비의 개발과 효율적 운용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적 기관이다. ITU는 헌장, 협력 그리고 업무규칙 등을 제정하고 있다. 헌장은 협약규정에 의하여 보충되는 ITU의 기본문서로서 헌장과 협약의 규정은 모두 회원국을 구속하는 국제전기통신규칙과 전파통신규칙에 의하여 보충된다.

현재 북한은 ITU의 회원국으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ITU의 전파규칙의 전파이용, 혼간섭 및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제법질서 존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ITU의 전파규칙은 국가간 협력 및 분쟁해결을 위한 조약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파수 이용 관련 기술방식, 주파수 대역의 용도 결정,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은 발제문에 따르면, KBS 한민족방송과 민간대북방송으로 구분되고 있다. 한민족방송의 경우, 한국어 국제방송으로 뉴스, 해설, 보도를 포함하여 옛 노래와 대중가요 등의 음악방송과 이산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간대북방송은 방송의 목적과 청취자 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지역에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은 주로 단파 또는 중파 등의 주파수 대역¹⁾을 이용하여 방송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의 전파 송출과 관련해서도 TV 방송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해외 또는 남한에서 라디오 방송을 위해 전파를 송출하더라도 북한에서 국제적 전파이용 절차 준수, 방해전파 송출 등을 통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라디오 방송이 제공되는 대역으로는 300kHz~3MHz 대역의 중파, 3MHz~30MHz 대역의 단파, 30MHz~300MHz 대역의 초단파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라디오 방송 제공을 위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AM 주파수 대역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아날로그 TV 주파수 대역의 일부는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파수 대역의 회수·재배치는 주파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전파 이용기술의 발전추세,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방송용 주파수 대역의 경우에도 라디오, TV 등의 용도를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및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발제문에서도 제기하였듯이,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라디오 방송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확보는 국내 주파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및 국제적인 규정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하여 방송을 위한 전파 송출 관련 대안으로 위성 DMB을 통하여 방송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ITU의 전파규칙은 유한한 자원이 주파수와 위성궤도 등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성관련 주파수는 해당 위성이 지상과의 통신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 이용 당사국을 포함한 그 밖의 많은 국가들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한정된 인류공동의 자원으로 특별한 이용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위성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 이용하고자 하는 주파수가 전파규칙에 따라 위성용 주파수로 분배되어 있을 것, ② 위성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와 궤도를 사전에 모든 주관청에 공표할 것, ③ 공표한 주파수의 사용을 위해 타 주관청과 조정 절차를 거칠 것, ④ 조정결과를 ITU 전파통신국에 통보하고, 국제 주파수등록원부에 등재할 것이라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위성망 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그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주관청간에 자율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 상대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ITU 전파통신국이 개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위성을 통하여 북한지역에 방송을 위하여 전파를 송출하는 경우에도 국내 관련 법령과 국제 관련 법령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에서 북한지역으로 전파의 송출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파의 송출에 관하여 국내 방송통신 관련 법령의

허가를 받더라도 국제법적 측면에서 제약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지역에 방송 확대와 관련해서 방송의 내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라디오 방송보다는 TV 방송의 내용이 국내법과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회 북한인권 개선 공청회 관련 미디어 기기 참고자료 -대담-

김유식 대표(디시인사이드)

1. 위성DMB

- 유희 위성 DMB폰 최대 200만 대 예상
- 위성 DMB 단말기는 위성DMB폰이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네비게이션이 3%, 그 외 기기는 전무함(위성DMB 단말기에 있어 휴대폰 외 다른 기기에 대한 고려가 큰 의미가 없음)
- 위성 DMB폰의 단말기 보급 대수는 정확한 자료를 찾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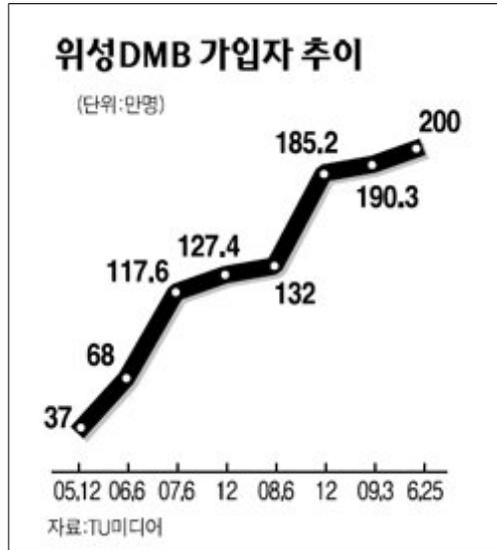
<TU미디어에서도 위성 DMB폰의 정확한 판매 대수를 추산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해 단말기 유통점 관계자는 “번호이동시에는 가격할인이 있는데다 최근엔 구형 단말기 가격도 많이 하락해서 (위성DMB폰을) 일반 휴대폰 용도로만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료 서비스 가입 없이도 EBS는 무료 시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원하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위성DMB폰 구입자와 서비스 가입자 수는 차이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TU미디어 관계자는 “위성DMB폰이 얼마나 팔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위성DMB폰 구입자 중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 * 적자산업으로서 전망이 어둡고 지상파 DMB에 비해 가입자가 매우 적은 등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자료 부족의 원인으로 보임



- 시장에서 추산하기로 단말기 보급대수 대비 위성DMB 서비스 이용률은 50~70% 정도로 보고 있음 (대략적인 시장 예측치로 단말기 판매가 100만대를 넘었던 시기에 가입자 수가 70~80만 정도였음.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됐을 것으로 추정)
- 현 위성DMB 이용자 수는 200만 명 내외(09년 자료, 최신 자료는 검색 불가)
- 서비스 이용률을 50%로 가정할 경우 위성DMB폰의 단말기 보급 대수는 200만의 2배인 400만 내외 정도로 예상
- 현재 휴대폰 가입자 수는 2010년 말 보급률 103%가 넘어 약 5천만 정도이며, 이른바 서랍 속에 잠자는 휴대폰, 유휴 휴대폰은 이의 절반 정도인 2,000만~3,000만 정도로 예상되고 있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조사 2,796만대)
- 사용 단말기 : 유휴 단말기의 비율을 이와 비슷한 2:1로 예상할 경우 유휴 위성DMB 폰 수는 최대 200만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400만대 * 50%)
- 위성DMB폰이 신형 모델이 잘 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실사용중인 위성DMB폰의 상당수도 유휴 휴대폰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임

1-2. 소형 발전기



-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자가 발전기는 3천원대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음
(상단 제품은 3,500원)

<http://item.gmarket.co.kr/detailview/Item.asp?goodscode=171071239>

2. USB 메모리

- USB 메모리 - 개당 최저가 4천원대 내외 추정
- 온라인 상 대량 제작 최저가 2,000개 주문 시 6,600원

<http://www.adpanchok.co.kr/ez/mall.php?cat=005002001&query=view&no=6574>

구분/수량	2,000	1,000	500	300	200	100	50
2GB	6,600	6,800	7,100	7,400	7,500	7,600	8,200
4GB	7,900	8,200	8,500	8,900	9,000	9,100	9,700
8GB	14,300	14,600	15,300	15,900	16,000	16,100	16,700
16GB	25,500	26,100	27,300	28,400	28,500	28,600	29,200

- 일반 쇼핑물 최저가 4,680원

http://www.interpark.com/product/Mall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100000&firpg=01&sc.prdNo=352602863&sc.dispNo=016001&sc.dispNo=016001

- * 일반 쇼핑물 최저가가 4천원대로 대량주문보다 싼 듯 보이나, 쇼핑물들은 개당 배송비를 고정적으로 3천원 이상 과하게 받는 눈속임 형태(여러 개를 구매해도 묶음 구매가 불가능)로 판매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최저가는 5천원대 정도라고 할 수 있음
- 만개~십만개 단위 이상의 대량 주문을 가정할 경우 4천원대 정도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반적인 대량 구매 제작 업체의 가격대를 평균할 때 대량 구매 시 2배 증가당 약 3~4%의 할인율 증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노트북

- 최저가 4만원대 (인도에서 작년 35달러 노트북이 출시됨)
- 관련 기사 : <http://www.ecosensorium.org/2010/07/india-develops-solar-powered.html>
- * 개별 부품 단가를 최저가로 조사해 합하면 설사 중고 부품으로 맞추더라도 아래와 같은 4만원대로 가격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당 제품이 현존하는 최저가 PC라고 보임)

인도, 4만원짜리 초저가 노트북 출시

최종수정 2010.07.25 09:34 기사입력 2010.07.25 09:10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인도에서 35달러(약4만원)짜리 초저가 노트북이 공개돼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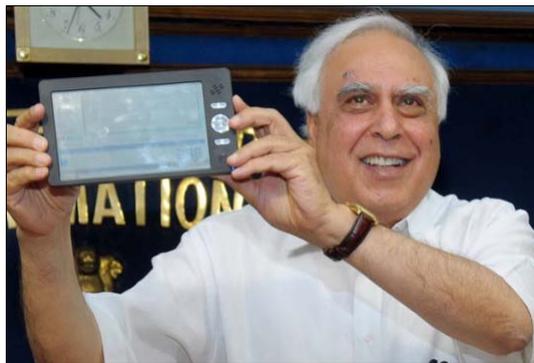
23일 인도 인적자원개발부의 카필 시발 장관은 "이는 인도 학생들에게 높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인도의 기술연구소와 과학연구소 연구팀이 개발한 이 노트북은 터치스크린 방식이며, 하드디스크가 없는 대신 휴대폰처럼 메모리카드를 이용한다. 또한 리눅스 운영체제(OS)를 이용하며 태양열 에너지로 작동 가능하다.

시발 장관은 "노트북 가격을 우선 20달러로 낮출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10달러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도입할 것이며, 시장 판매에도 나설 계획이다.

- 단 해당 노트북의 경우 키보드가 없고 터치스크린으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노트북이라기 보다는 태블릿PC에 가까운 형태임, OS는 리눅스를 사용



- 동력으로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어 전력난이 심각한 지역 보급에 상당한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4. 킨들, 기타 미디어 기기

- 현재 아마존 킨들의 최저가 제품은 약 15만원(139달러)에 판매되고 있음
- 비슷한 이북 종류의 미디어 기기들도 대부분 최저가가 10만원 대 이상으로 대량 보급에는 무리가 있음
- 중고 PDA 등의 최저가는 3~5만원 내외 정도(대량 구매에는 한계가 있음)
- 동영상 플레이가 가능한 초저가 미디어 기기로는 저가 (중국산) MP4 플레이어가 있음. 현재 국내에서 소비자 최저가 1만 5천원 전후에 판매되고 있음

초저가 MP4 플레이어 예)



14,900원 : 동영상 재생 가능, 2GB 메모리 내장, 2인치 액정

http://shopping.naver.com/detail/detail.nhn?cat_id=00030013&nv_mid=5478057087



15,800원 : 동영상 재생 가능, 2GB 메모리 내장, 1.8인치 액정
<http://itempage.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A544157693>

- 대량 구매 시 보다 저가인 1만원 초반 대에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다른 미디어 기기들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가격과 작은 크기, 가벼운 무게 등이 장점

제2회 북한인권 개선 공청회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방안-

| 인 쇄 | 2011년 2월

| 발 행 | 2011년 2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758 | F A X | (02) 2125-973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299-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